

ITU추가전권위원회에 정부대표단 일원으로 참석하고...

기간 · 1992년 12월7일~22일 장소 · 스위스제네바 CICG회의장 보고서 · 표준화국 표준1부장 장명국

1. 서 언

국제전기통신연합(ITU: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Union)은 1865년 5월 17일에 20개국이 모여 창설하였으며 금년이 제128주년이 되는 해이다. ITU는 UN산하의 전기통신분야 전문기구로서 통신분야의 기술 표준제정, 요금원칙설정, 통신서비스 기준설정, 주파수 등록 및 할당, 기술협력, 기술원조 등 여러가지 정책 결정 및 이를 수행한다.

특히 최근에 있어 세계적으로 전기통신사업의 민영화, 경쟁원리의 도입, 가속되는 기술혁신등 급변하는 전기통신환경의 변화에 적응하는 자구책으로 ITU의 효율적 구조 및 기능 개편을 추구키로 하여 1989년 프랑스 니스 전권위원회에서 이의 검토, 방안수립을 수행할 HLC(고위위원회)의 설치가 결의되었다.

HLC는 수차례의 공식, 비공식모임을 갖고 ITU기능을 표준화, 전파통신, 개발의 3개 부문으로 재편할 것을 근간으로 하는 HLC권고인 "변화하는 전기통신환경"이란 보고서를 작성하였다.

따라서 임시회의 성격인 금번 추가전권위원회(APP:Additional Plenipotentiary Conference)는 상기 HLC권고를 기초로 한 ITU의 새로운 헌장(Constitution) 및 협약(Convention)을 개정키 위함이 최우선 의제였으며 그외 중요의제로는 전기통신개발국(BDT)국장선출, C지역(동유럽)관리이사국 공석 보궐선거등이 있었다.

이번 제네바 추가전권위원회회의의 논의사항들을 간략히 적어본다.

2. 추가전권위원회회의 개요 및 진행

가. ITU 전권위원회회의의 기능

ITU의 최고기관으로 전권위원회회의는 연합활동의 모든 영역에 궁극적인 책임과 각 기관의 업무추진에 대한 감독권을 가지고 있으며, 그 기능은 아래와 같다.

- ITU 목적달성을 위한 일반적인 정책결정
- ITU 산하기관 활동에 관한 관리이사회의 보고 심사
- 주관청회의 및 회의계획 설정
- ITU의 연도별 예산 한도액 설정
- ITU직원의 봉급기준등 직원에 관한 사항
- ITU의 회계감사 및 승인
- 관리이사국 선출
- 사무총장·사무차장 선거 및 취임일 설정
- 국제주파수등록위원회가 선거 및 취임일 설정
- 국제자문위원회(CCI)의 위원장 선거 및 취임일 설정
- 협약개정
- 타 국제기구와의 협정 검토
- 기타 전기통신 문제에 관한 사항

나. ITU 전권위원회회의의 개최역사

이번 추가전권위원회회의는 제13차 정기회의인 1989년 Nice전권위원회회의의 결정에 따라, 급격한 세계전기통신 환경의 변화에 적응키 위한 ITU의 구조 및 기능의 개편을 위해 특별히 개최된 임시회의의 성격이었다.

제2차 세계대전이후 지금까지의 회의 개최내역은 다음과 같다.

개 최 기 간	개 최 지	회원국	참가국	국제기구참가수	비 고
1947. 7. 2 ~ 10. 2	Atlantic city	78	76	4	
1952.10. 3 ~ 12.22	Buenos Aires	87	82	5	
1959.10.14 ~ 12.21	Geneva	96	88	5	
1965. 9.14 ~ 11.12	Montreux	129	122	9	
1973. 9.14 ~ 10.25	Malaga-Torremolinos	146	131	6	
1982. 9.28 ~ 11. 7	Nairobi	157	147	9	
1989. 5.23 ~ 6. 30	Nice	166	143	9	
1992.12. 7 ~ 12.22	Geneva	175	141	13	임시회의

ITU 협약에는 회의개최 간격을 통상 5년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강제력이 없으며 과거 부에노스아이레스(1952)회의 이후로 통상 5년의 간격은 지켜지지 않았기 때문에 82년 나이로비회의에서는 통상 5년으로 하되 6년은 초과하지 못한다고 규정하였으나 다만 다음의 ITU 전권위원회는 7년후인 1989년에 개최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그에 따라 니스 전권위원회는 7년만에 열리게 되었고, 제14차회의는 원칙대로 5년후인 1994년 9월에 일본 교토에서 개최기로 결정되었으며 그 사이 구조개편을 특별히 논의키 위해 이번의 추가전권위원회(Additional Plenipotentiary Conference)를 1992년12월중에 개최하게 된 것이다.

3. 제네바 추가전권위원회의의 개관

가. 의 의

금번 제네바 추가전권위원회의는 1989년 5월 프랑스 니스 전권위원회의 이후 3년만에 개최되며, 2년후인 1994년 9월 일본 교토에서 개최될 14차 정기 전권위원회의를 대비한 임시회의로써 아주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회의였다. 즉, 다가올 21세기가 고도 전기통신에 힘입는 정보화사회로 구현될 것에 대비하여 기존의 서비스 분류체계, 관련규칙 및 권고표준등의 재정이나 연합의 구조 기능 변경등 근본적인 개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난 니스 전권위원회의의 결정에 따라 설치된 HLC(고위위원회)의 검토결과(HLC 권고 : 변화하는 전기통신 환경)에 따라 작성된 새로운

ITU헌장(Constitution)과 협약(Convention)을 논의·확정키 위해 소집되었기 때무네 금번 회의는 전세계의 커다란 주목을 받았다.

뿐만 아니라 지난 82년 나이로비 전권위원회에서 천명되었던 선·후진국간 개발격차 해소의 대원칙이 지금까지 해소되지 않아 많은 개발도상국 및 후진국 등이 이의 진전을 위한 강력한 ITU 개발부문의 조직 및 지도력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상기와 같은 과제들을 해해야 할 막중한 책임을 지고 개최된 금번 회의는 ITU의 앞날과 세계 전기통신의 미래를 가늠하는 진통의 무대였다고 할 수 있다.

나. 추가전권위원회의의 개요

1) 규모

이 회의에는 172개 회원국중 141개국으로부터 800명의 대표 및 자문등이 참가하고 또한 UN, IBRD, GATT, WHO, UPU, UNESCO 등 각 국제기관 및 APT, CEPT, UPAT, ATU, INTERLSAT, INMARSAT, ETELSAT 등 지역 전기통신 국제기구가 Observer를 파견하였다.

총 참가자수는 대표 800명, ITU 직원 80여명(동시통역요원 포함) 등 총 900명 가까운 대규모 회의였다.

우리나라에서는 통신정책심의관 박영일 국장을 수석대표로 하고 통신협력과장을 교체 수석대표로하여 체신부, 외무부, 한국통신, 데이콤, 한국전자통신연구소, 통신개발연구원, 한국통신기술협회로 구성된 총 15명의 대표단을 파견하

였으며 북한도 3명의 대표를 파견하였다.

한편 회의장은 제네바 ITU본부옆에 있는 CCIG(Center for International Conference in Geneva) 빌딩으로서 초현대식 시설을 갖춘 회의장 전용 건물이었다.

2)주요 처리내용

금번 회의에서는 HLC 권고를 바탕으로 한 신협약, 협약의 제정, ITU의 기구개편, 재정, 선거, 회계등 많은 중요한 사안등이 토의되었는데, 대부분의 사안이 각국의 정치·경제적인 이해 및 선진국과 후진국과의 괴리등으로 인하여 쉽사리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연일 회의시간 연장 및 휴일 회의 개최등을 통하여 결론을 도출하려 했으나, 결국 격론을 거듭하여 겨우 예정대로 12월 22일에서야 신협약과 협약에 서명하고 막을 내릴 수 있었다.

이번 회의에서 심의된 정식문서는 196건, 임시문서 15건에 이르며 채택된 최종의정서(Final Act)는 다음과 같다.

- 가) 국제전기통신협약 : 전문 및 59개조
- 나) 국제전기통신협약 : 54개조
- 다) 각국의 최종선언 및 유보사항
- 라) 기타 결의 16건, 권고 1건

3) 개최식

추가전권위원회의 개최식은 1992년 12월 7일 오후 2시 30분 대회의실 I에서 141개국에서 참가한 800명의 대표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거행되었다.

이날 오전에는 각국의 수석 대표회의가 있어서 여기에서 회의의 기본방향, 형태, 일정, 의장선임등에 대한 비공식회의가 있었다.

전체회의 개막과 동시에 의장 및 부의장의 선출이 있었으며 이에 대한 합의는 이미 오전 회의에서 이루어졌다. 의장으로 선출된 Mr. B.D.Riedmatt(스위스)의 인사말과 ITU사무총장 Mr.P.Tarjanne의 인사말이 있었다.

다음으로 아래와 같이 의장단이 구성되었으며 각지역 부의장을 대표하여 E지역 부의장인 일본이 교토회의의 중요성 및 준비사항등을 설명하였다.

끝이어 제1차 총회가 개최되어 각 위원회의 임원진 선출이 거행되었으며 그 내용은 아래의 <표1>와 같다.

- 하부위원회 구성 및 임원진<표2>
 - 4개의 법정위원회 : 운영, 신임장, 예산통제, 편집위원회
 - 2개의 의제검토위원회
 - 제4위원회 : 3개부문 관련의제 (ITU구조)

<표1> 전체회의

구분	지역명	성명	국적
의장	B지역(서유럽)	Mr. Bernard de Riedmatten	스위스
부의장	A지역(미주)	Mr. B. Holmes	미국
	C지역(동유럽)	Mr. V. Bulgak	러시아
	D지역(아프리카)	Mr. A. Berrada	모로코
	E지역(아·태)	Mr. Y. Utsumi	일본

<표2> 하부위원회 구성 및 임원진

위원회명 및 업무	의장	부의장
제1위원회(운영)	전체회의 및 각위원회 의장, 부의장으로 구성	
제2위원회(신임장)	R. Blois (브라질)	M. Ouhadj (알제리아), H. Shahabeddin (이란)
제3위원회(예산통제)	S. Al-Basheer (사우디)	F. Zammit Dimech (몰타)
제4위원회(각부문 관련문제)	C. Oliver (호주)	G. Warren (캐나다), S. K. Chemai (케냐)
제5위원회(각부문 이외문제)	H. Vignon (베네티)	A. M. Joshi (인도), A. Matas (체코)
제6위원회(편집)	M. Thue' (프랑스)	N. McMillan (영국), C. Crespo Martinez (스웨덴)

- 제5위원회 : 3개부문이외 관련의제(일반 규정등)

특히, 회의 마지막 부분에서는 예정에 없던 각국의 대표단 대표의 기조연설이 있었는데(8개국만 발언), 그 요지는 다음과 같다.

- 급변하는 전기통신환경에 부응하기 위해 개발, 전파, 표준화부문등 ITU구조를 3개 분야로 개편할 것을 지지하며,
- 각 부문간의 중복업무 조정에 대한 심층적인 검토와 부문별 간부구성 및 업무 수행상의 공정성 보장이 중요함을 강조함.

4. 주요 회의 내용 및 결과

가. 선거직 간부 선출 및 관리이사국 보궐선거

ITU의 전권위원회의에서는 나이로비 협약 제16조 전권위원회 #40~#44에 의거하여 선출직과 관리이사국을 선출하며, 선출된 간부의 취임일자를 확정짓는다.

이번 추가전권위원회에서는 사무총장이 겸직하고 있는 BDT국장 및 통독으로 공석이 된 C지역 관리이사국 보궐선거가 있었다.

1) 전기통신개발국(BDT) 국장 선거

- 모두 8명이 입후보하여 치열한 경합양상을 보인 BDT 국장선거에서는 3차 투표까지 과반수 득표자를 내지 못하였음.
- 제3차 투표시 최고 득표자인 인도네시아와 차점자인 카메룬 등 2명의 입후보자에 대한 결선투표에서는 인도네시아의 Djawatampu 후보가 과반수를 획득, 초대 BDT 국장으로 당선되었음.

2) C지역(동유럽) 관리이사국 보궐선거

- 통독으로 공석이 된 C지역 관리이사국 선거에서 그동안 단독 입후보국이었던 루마니아 외에 헝가리가 추가 입후보함.
- 투표결과 루마니아가 구통독 의석을 승계할 새로운 관리이사국으로 선출되었으며, 한국은 정부 훈령에 따라 루마니아를 지지(투표결과 : 루마니아 84, 헝가리 38, 기권 7)

나. ITU구조개편

1) 개요

이번 추가전권위원회의의 가장 큰 이슈는 역시 ITU 구조 및 기능에 대한 전면 재검토 및 개편에 관한 것이었기 때문에 이에 대해 가장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다.

각 회원국들의 초기입장은 대체로 3가지 그룹으로 나뉘었는데 A그룹은 ITU의 구조는 크게 입법기관과 비입법기관으로 구성되므로 개편될 ITU의 수직적 구조에서 회의(Conference), 사무국(Bureau), 연구반(Study group)등의 체계에 불만을 표시하는 국가군과 B그룹은 대체로 HLC 권고가 완벽하지는 않지만 모든 측면을 균형있게 조화한 타협안으로 기능별 3부문 구조개편을 원칙적으로 찬성하는 국가들로 대개 미국, 일본, 한국등을 포함한 다수의 국가군이고, C그룹은 구조개편의 기본원칙에는 찬동하나 IFRB의 개편에는 반대하는 국가군이 있었다.

2) 논의된 주요의제별 진행 및 결과

가)일반규정

(1) 회의진행

- 일반규정조항은 제5위원회 소관 사항이나 대부분이 조직관련 결정사항이 제4위원회에서 이루어져야 반영되므로 []을 사용하여 진행기로 결정
- 예산편성 주기를 2년으로 하는 방안과 1년으로 하는 방안(중국, 필리핀, 세네갈 지지)에 대해 1시간정도 논란
- 전권위원회의 개최주기를 5년으로 유지하자는 소수의견(케냐등)이 있었으나 앞서 논의된 2년의 예산편성 주기를 고려하여 HLC권고안 찬성이 대세였음.
- 선출직위의 국적중복 문제에 대해 아국의 제안은 전파규칙평의회(RRB)위원과 전파통신국장에 한해 중복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었으나, 중국 제안이 좀 더 포괄적인(연합의 선출직 간부전원)것이어서 자동반영 되었음.
- 한편 선출직위의 연임 제한에 대해서도

우리나라를 포함한 다수의 국가들이 1회로 제한하자는 안을 제출하여 별로 반대가 없었음.

- 새로운 현장/협약의 발효 문제와 관련하여 법적절차 검토문제로 1시간 이상 논의가 계속되었으며, 다음과 같은 세가지 입장으로 정리될 수 있음.
 - 개정초안의 입장 : '94. 7. 1 발효
 - 한국과 케냐의 제안 : '94. 7. 1보다 일정을 앞으로 단축하자는 입장 (한국 : '94. 1. 1 케냐 : '94. 3. 1)
 - 중국과 오만의 제안 : 회원국의 1/3의 비준
- ITU 법률 전문가로부터 이러한 문제가 HLC에서도 신중한 검토끝에 '94. 7. 1로 잠정적인 발효일 지정이 되었다는 배경설명을 들은 후에 별다른 이견없이 개정초안대로 '94. 7. 1을 발효일자로 채택하였음.

(2) 회의결과

- 연합의 최고 의사결정기관인 전권위원회의 개최 주기 변경
 - 현재의 5년을 4년으로 변경
- 현재 WATTC의 기능을 수행할 국제통신 세계회의(WCIT) 신설
 - 개최필요시 전권위원회에서 소집결정
 - 국제전기통신규칙(ITR) 개정기능
- 관리이사회를 이사회로 개칭하고 정책심의기능을 강화
- 기획기능 강화를 위해 연합의 예산주기를 1년에서 2년으로 변경
- 새로운 현장/협약은 '94. 7. 1에 발효됨을 명시
- 연합의 선출직 간부 (RRB 위원포함)는 모두 다른 국적이어야하며, 연임허용은 1회로 제한
- 사무총장 소속의 전력정책기획단(SPPU) 신설

나) 개발부문(Telecommunication Development Sector)

(1) 개요

ITU의 목적에도 명시되었듯이 ITU근간을 이루고 있었으나, 나이로비 전권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1985년의 작성된 조사보고서인 "Missing Link"을 기초로 하여 선·후진국간의 전기통신개발 격차를 해소시키기 위해, 1989년 Nice 전권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설립되어 1990년 1월부터 사무총장이 BDT국장을 겸직하여 업무를 수행하게 되었다.

세계적으로 전기통신이 선진국과 개도국간에 심한 격차가 상존하고 있어 국제적으로 지역적으로 협력을 강화하고 기술교류를 활발히 촉진함은 물론 재정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하여 전기통신발달의 격차를 줄여보자는 목적에서 이 분야가 설립되었으며, 개도국과 후진국 중심으로 이 분야의 강화 및 BDT의 강력한 지도력을 줄기차게 요구하고 있다.

(가) 기능

- 국가 경제사회 개발 계획을 위하여 전기통신 정보제공자에게 정책적 권고를 한다.
- 인력개발계획, 관리 및 자원을 연구하고 개발함으로써 통신망의 운용과 확장을 촉진한다.
- 지역전기통신기구와 세계 및 지역 개발 기금지원기관과 협력하여 전기통신 발전 성장을 촉진한다.

(나) 조직

- 개발분야를 총괄하는 개발국의 설치
- 개발국장의 업무를 자문하는 자문기구
- 개발분야의 가이드라인과 업무계획을 협의하는 연구반 (Study Group)

(다) 회의

- 세계전기통신개발회의 : 개발업무의 방향과 범위의 설정 및 권고
- 지역전기통신개발회의 : 지역적 특성과 특정한 요구에 따라 개발국에 권고안을 제시한다.

(2) 회의진행

- 개도국 및 후진국들은 기본적으로 선진국과의 전기통신개발 격차를 해소키 위해

개발부문의 신설에 지대한 관심과 적극적인 호응을 보였음.

- 개발자문위원회의 구성과 관련하여 지역 안배 문제와 그 위원 구성을 개발국장이 지명하는 방안과 관리이사회에서 선출하는 방안등에 대하여 토의가 진행.
- 결국 이 문제에 대해 의견일치를 보지 못하고 특별작업반 (Ad Hoc 4A)을 구성하여 검토한 후 다시 재론하기로 결정하여, 결국 상기 작업반에서 작성하여 제출된 타협안을 본 회의 토론후 채택
- 전기통신기술의 발전과 환경의 변화로 인해 개발부문에 대한 표준화부문 및 전파통신부문에서의 적극적인 지원 및 협조를 하여야 한다는 많은 개도국의 발언이 있었으며 결의 채택을 제안하였음.

(3) 회의결과

- 개도국에 대한 지원활동강화를 위해 전기통신개발국(BDT)의 기능을 강화하고 그 지위를 격상
- 세계전기통신개발회의(WDC)를 신설하고 4년 주기로 회의 개최
- 개발자문위원회 (Advisory Board) 신설
 - BDT 국장이 사무총장과 협의하여 구성
 - BDT 국장에게 다음 사항에 대해 자문기능을 수행
 - 통신개발활동의 전략 및 우선순위
 - 통신개발에 관심있는 기관들과의 협력 강화 방안

다) 전파통신부문 (Radiocommunication Sector)

(1) 회의진행

- 5인의 상근위원제인 IFRB를 9인의 시간제 전파규칙평의회(RRB)로 개편하는 개정초안에 대해 많은 논의가 있었다. 현재 IFRB가 수행하고 있는 기능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시간제 RRB로의 개편이 공정성(Impartiality)보장 측면에서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하는 점이 논의의 핵심이었으며 논의 사항은 다음과 같다.
 - 쿠바, 멕시코, 러시아, IFRB위원 (캐

나다, 영국, 소련, 알제리아, 일본)등은 기존 IFRB의 유지를 위해 필요성 및 공정성의 이유를 들어 강력하게 주장하였다.

- 아르헨티나, 스페인 등은 의장제도의 도입을 주장하였다.
- 주파수등록위원회(IFRB)의 개편문제에 관하여는 결국 비밀투표를 통해 HLC 권고에 따라 9인제로 결정되어, 일본 교토회의시 위원들을 선출하기로 합의 되었다. 단, 회의종반에 제기된 아랍권의 3인제 상근 및 6인제 비상근제도는 차기회의시 논의하기로 하였으며, 이들 위원들의 관련 회의(WRC등)에의 참여 여부에 대해서 많은 논란이 있었다.
- 전파통신과 표준화 부문간의 업무분담의 기본원칙에는 대부분 동의하였으나 양 부문의 경계설정에 대해서 많은 선진국들이 심도있는 검토후 결정을 요구하였으며 분장방안을 전파통신국장과 표준화국장에게 강구하도록하며 1993년 1월에 CCITT, CCIR Joint Ad-hoc 회의에 검토하여 교토 전권위원회에 보고토록 결의안이 채택되었다.
- 구조 개편에 따라 신설될 세계전파통신회의에 대한 토의에서는 아래와 같은 입장이 대립되어 장시간 토의가 진행되었음.
 - 미국 및 유럽국가들은 고위위원회(HLC) 권고에 기초하여 하나의 Conference 하에 기술문제를 다루는 Radio Assembly를 제안하였으며
 - 일본은 규제 문제를 다루는 회의와 기술문제를 다루는 회의로 구분하고, 회의 개최 시기만 동시 또는 연속하여 개최하는 제안을 제출
- 결국 영국이 제안한 하나의 Conference 하에 기술문제를 다루는 기능과 규제문제를 다루는 기능을 두도록 하자는 절충안을 기본방향으로 채택하여 논의를 계속하기로 함.
- 효율적이고 공평한 전파자원의 이용원칙의 명문화에 대해서는 선진국과 HLC의

권고안에 따른 현장개정 초안에는 전파와 정지케도가 유한한 자원임을 들어 "효과적인 이용"으로 이용원칙을 정의했으나 아국이 공정성 추가를 요구하여 "합리적, 공정한, 효율적, 경제적이용"으로 수정 채택되었다.

- 비 정지케도 이용관련해서는 멕시코등 일부국가가 "라디오 주파수 스펙트럼과 정지 위성케도"라는 조항에 비정지케도의 명문화도 요구함으로써 논란끝에 "모든 라디오 시설"로 지상과 우주부분을 포함 하도록 하였다.

(2) 회의 결과<표3>

- 현재의 CCIR과 IFRB 사무국을 통합하여 전파통신국(Bureau) 설치
- 현재 WARC의 기능을 수행할 세계전파 통신회의(WRC)를 신설하고 2년주기로 회의개최 (아래표 참조)
- 현재 CCIR 총회의 기능을 수행할 전파 통신총회(RA)를 신설하고 WRC와 연계하여 개최토록 함 (동일시기 및 장소)
- 현재 5인 상임제의 IFRB를 9인 시간제의 전파규칙평의회 (RRB)로 개편
- 자문반 (Advisory Group)은 현장이나 협약에는 명시하지 않고 결의로써 자문반 구성을 인정하며, 전파통신총회(RA)에서 구성토록 함
- 자문반의 임무
 - 전파통신부문 활동의 우선순위 및 전략 검토
 - 사업계획의 집행상황 검토
 - 연구반 활동에 지침 제시
 - 연합의 다른 부문과의 협력·조정방안 권고

라) 표준화부문 (Telecommunication Standardization Sector)

(1) 회의진행

- 일본은 표준화자문반뿐 아니라 각부문의 자문반 또는 위원회에 대한 규칙 및 절차를 해당부문 세계회의에서 결정할 것을 제안했으며, 중국은 자문반이나 연구반 활동이 주로 선진국 위주로 진행되며 회의 개최수, 복잡성등을 내세워 자문반 신설에 대해 반대
- 한국, 호주, 싱가포르 등은 자문반의 설치 및 조문화에 찬동하며, 참여 기회는 모든 국가 및 기관에서 공개될 것을 제안
- ITU권고(Recommendation)의 신속승인 절차에 대해, 권고제정의 2원화에 대해 견해가 대립되어 장시간의 토론이 계속되었으나 (선진국 입장 : 신속승인절차의 유지찬성, 개도국 및 후진국 : 신속승인절차의 반대) 초안 준비반에서 제출된 개정 초안대로 채택

(2) 회의결과

- 현재 CCIR의 표준화활동과 CCITT를 통합하여 표준화국 설치
- 현재 CCITT 총회의 기능을 수행할 세계 표준화회의(WTSC)를 신설하고 4년 주기로 회의개최
- 자문반(Advisory Group)은 세계표준화 회의에서 구성토록 함
- 자문반의 임무는 전파통신부문과 동일
- 마) ITU신구조의 조속집행을 위한 잠정조치
 - 신헌장/협약의 ITU의 구조 및 활동에 관한 규정은 '93. 3. 1 부터 잠정적으로

<표3> 회의 결과

관 련 분 야	종 전	변 경
주파수 등록과 혼신에 따른 판단 및 조정	IFRB	RRB(Radio Regulation Board)
전파자원의 분배와 이용조건 선정 (RR의 제정과 개정)	WARC	WRC(World Radio Conference)
전파자원 이용 효율화를 위한 기술 개발	CCIR	RA(Radiocommunication Assembly)
전파부문의 표준화	CCIR	표준화부문으로 이관, 단 구체적인 직무구분 계속 검토하기로 함.

적용토록 함.

- '94년 교토전권위원회의 개최시까지의 과도체제
 - CCITT 위원장이 표준화국장 임무대행
 - CCIR 위원장이 전파통신국장 임무대행
 - IFRB 위원들이 RRB위원 임무대행
- 각종 회의를 조기 개최하여 각 부문별로 구조개편 후속작업을 조속히 집행토록 함.
 - CCITT 총회('92. 3. 헬싱키)를 제1차 세계표준화회의(WTSC)로 명칭을 변경하여 개최
 - 제1차 세계전파통신회의를 '93. 11에 제네바에서 전파통신총회(RA)와 연계하여 개최
 - 제1차 세계개발회의는 '94년 초에 아르헨티나에서 개최 예정

5. 대표단 주요활동

가. ITU 구조개편에 대한 기본 입장 표명

- 한국은 제1차 전체회의(12.7)에서 수석대표 기조발언을 통해 기본 정책방향을 제시
 - 한국 외에 러시아, 중국 등 8개국 수석대표가 발언
- 발언요지
 - 급변하는 전기통신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ITU구조를 개발, 전파, 표준화 등 3개 부문으로 개편하는 것을 지지하며,
 - 전파통신과 표준화 부문간의 업무조정제에 대한 심층적인 검토와 전파규칙평의회(RRB)의 공정성 보장필요성과,
 - 선진국과 개도국 모두에게 혜택을 주는 전파자원 및 정지위성체도의 이용 원칙을 강조함.

나. 구조개편에 한국제안사항 반영

- 제안서 제출국가 중 첫번째로 제안서를 제출한 한국은 ITU 구조개편에 대한 13개 제안항목 중 7개 항목을 반영시켰음.
- 구조개편에 반영된 한국 제안사항
 - 전파자원 및 정지위성체도는 유한한 인

류공동자원이므로 기술 선후진국간의 공평한 사용이 보장되도록 해야 함.

- 향후 우리나라의 진출기회를 확대키 위해 선출직 간부들의 연임허용은 1회로 제안
- 모든 회원국에게 공평한 진출의 기회부여를 위해 선출직 간부들의 국적중복을 금지토록 함
- 전파통신 및 표준자문반은 참가를 희망하는 모든 대표에게 개방되도록 함
- 부속서 상의 운영체(Operating Agency) 정의 개정

다. 세계전기통신자문위원회(WTAC) 위원 진출

- WTAC은 ITU의 전략정책에 대해 사무총장에게 자문하기 위하여 16개국 18개 통신사업자 대표로 구성, 신설된 기관임.
- 한국은 통신선진국으로서의 위상강화와 향후 WTAC이 수행할 역할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한국통신사업자의 추가 참여 허용을 요청, 사무총장으로부터 이에 대한 확답을 얻음.
 - 한국통신사장을 위원으로 추천

라. C지역(동유럽) 관리이사국 선거시 선거감독국가로 Ⅲ선출등

- ITU의 각종 선거시 선거감독 및 검표는 5개 지역에서 각각 1개국을 선정, 해당 지역을 대표하게 되어 있음.
- 최초로 한국이 아·태지역을 대표하는 선거감독국가로 선정되어 선거관리 활동을 하였음.

마. 전파, 표준화부문 특별작업반 활동참가

- 동 작업반 (Ad-Hoc Group 4B)은 전파통신과 표준화부문간의 업무조정문제를 검토하기 위하여 구성되었음.
- 한국등 23개 국가로 구성되었으며, 이번 추가전권위원회의 기간중 구성된 2개의 특별작업반중 하나임

바. 아프리카지역 수석대표초청 오찬개최

- 한국의 계속적인 관리이사국 진출과 아프리카지역에 대한 사업진출 기반조성을 목적으로 개최
- 아프리카지역에서 참가한 회원국의 수석대표를 초청하여 성황리에 개최 (12.14, 인터컨티넨탈 호텔)
 - 33개 피 초청국중에서 27개국의 수석대표등 47명 참석)

6. ITU 신 구조의 특징 및 평가

가. 새로운 ITU 구조의 특징

- 구조개편의 목적
 - 급변하는 전기통신환경변화(국제화, 표준화의 확대, 전파부문 상용화의 강화, 기술발전 및 통합 등)에 대한 ITU의 대응능력을 제고
- 구조개편의 특징
 - 기존의 ITU구조에서 여러 기관에 산재해 있거나 중복되는 업무들을 "기능"을 중심으로 전파통신, 표준, 개발 등 3개 부문(Sector)으로 개편하여 체계적인 업무수행을 도모 (표1참조)
 - 전략정책 및 기획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이러한 기능의 보강
 - 전권위원회의 및 이사회의 전략정책심의기능 강화
 - 각 부문에 자문반 (개발부문은 자문위원회) 설치
 - 사무총장실에 전략정책기획단 (SPPU) 설치
 - 세계전기통신자문위원회 (WTAC) 설치
 - 5인의 상근 위원으로 구성되어 국가간 주파수의 분배, 조정 및 등록업무를 수행해 온 국제주파수등록위원회(IFRB)를 9인의 시간제 위원으로 구성되는 전파규칙평의회(RRB)로 개편

나. 구조개편에 대한 각국 입장

- 미국 등 선진국의 입장
 - 표준 및 전파부문의 최대한의 경제적 이익을 얻기 위하여 적극적인 노력을 전개,

성과를 거듭

- 개발부문의 신설에 대해서도 균형있는 ITU활동이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
- 개도국들의 입장
 - 개발부문의 신설에 지대한 관심과 적극적인 호응을 보임
 - 한편 전파와 표준부문의 개편에 대해서는 현재의 기술격차로 인해 향후 전개될 활동에 대해 우려가 없지는 않았으나, 큰 반대는 없었음.
- ※ 러시아와 중국은 기존체제를 가급적 고수하려는 입장에서 회의에 임하였으나 일부 내용을 보완하는 수준에서 대세에 따를 수 밖에 없었으며, 일본은 아시아지역에서 개발(표준)부문에서 주도적 역할을 하려는 노력을 적극적으로 전개하여 관련 결의 (Resolution)등이 채택되도록 함

다. 평 가

- 새로운 ITU구조가 모든 회원국들의 입장을 완전히 만족시켜 주는 것은 아니지만, 대체로 급변하는 환경변화에 대한 ITU의 대응능력을 제고하기 위한 체계 재정비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될 수 있음.
- 또한 개발부문은 다른 부문과는 달리 규제적인 성격이 없어 그 실효성에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나, 그동안 ITU회원국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개도국들의 줄기찬 요구를 수용하여 개발부문을 전파통신이나 표준화부문과 동일한 지위의 ITU주요활동의 하나로서 격상시킨 것은 지속적으로 커지고 있는 세계통신발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ITU의 적극적인 노력의 일환으로 평가됨.
- 한편 전파통신부문에서 핵심 의제였던 IFRB의 시간제 RRB로의 개편은 그동안에 축적된 절차규칙 및 기술기준에 의해 기존 IFRB 업무의 상당부분을 일상화된 전산업무로 처리함으로써 비용절감을 도모 하자는 것이지 업무자체의 중요성이 감소한 것은 결코 아닌바, 무엇보다 중요한 요

소인 공정성을 향후 RRB운영에서 어떻게 보장해 나갈 것인지가 IFRB개편의 성패를 좌우하는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임.

- 결론적으로 이번 회의에서는 ITU구조의 기본틀(Framework)만을 규정지은 것이며, 94년 교토전권위원회의 때까지 새로운 구조의 구체화 과정에서 각 부문간의 연계기능강화 및 각 부문내의 후속개편조치들이 향후 새로운 ITU의 전체적인 성격을 규정할 것으로 전망됨.

7. 결 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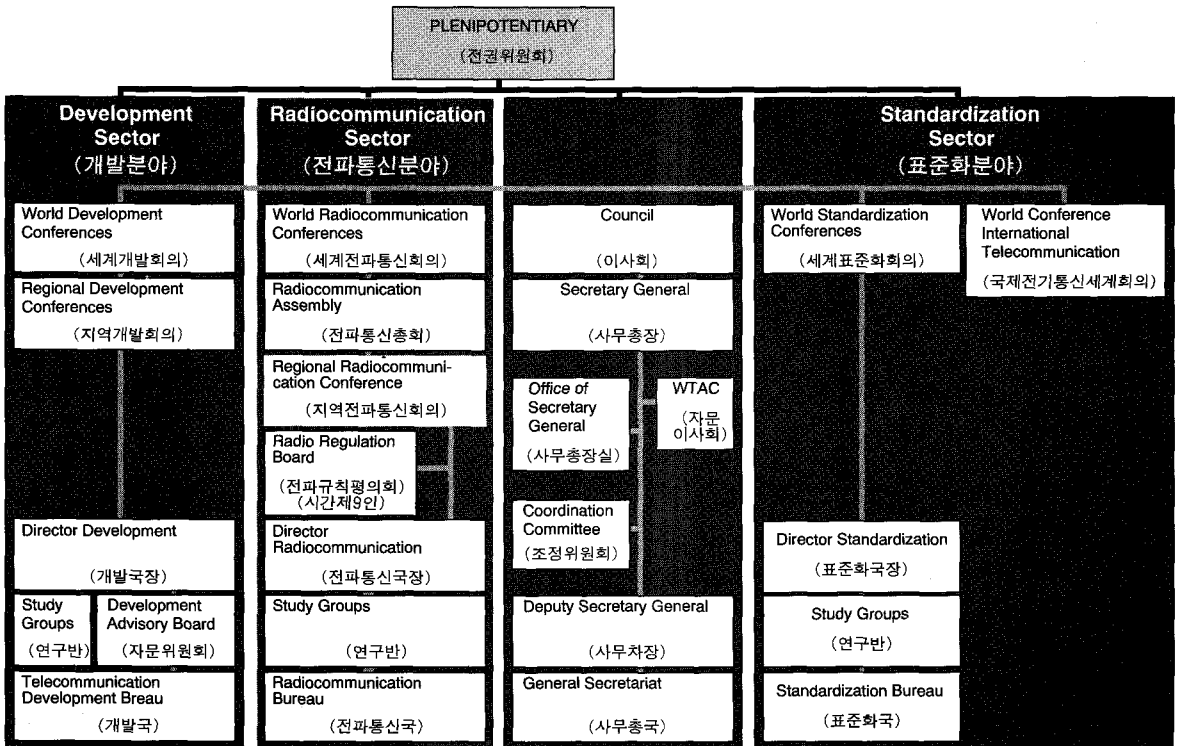
금번 추가전권위원회의는 구소련의 붕괴 및 동구권의 몰락으로 인한 동서냉전의 종식이 가져온 신세계질서속에 개척되었다는 정치적인 의미나 급변하는 전기통신환경에서 살아남기 위한 ITU자주적인 개혁과 각국의 향후 정보

통신분야의 발전전략등이 서로 맞물려 그 의미가 더욱 크다고 본다.

이제 우리나라는 세계통신분야에서 점하는 위치가 하드웨어적으로 10위권내 통신선진국의 대접을 받고 있고, ITU에서도 관리이사국이라는 지위를 확보하고 있지만 그에 상응하는 활동 즉, 국제사회의 요구에 부응하는 표준제정의 적극참여, 기술개발, 기술원조 및 협력, 국제회의 및 기구의 간부직 피선등 소프트웨어적으로도 명실상부한 선진국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고 본다.

그러기 위해서는 국제기구 담당조직의 보강, 제도의 뒷받침, 이를 감당할 수 있는 전문인력의 양성, 국제활동의 인식제고, 상시 국제기구 활동 전략 및 정책 수립 위원회구성등 향후 개선보강될 부문이 산적해 있다고 생각하며, 우리나라 모든 통신관련 종사자들의 다짐이 뒤따라야 한다.

<표 4> 개편된 ITU의 체계



* 사무총장실에 SPPU(기획전략팀) 신설